

현안과제연구

2014. 5.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연구수행 : 최 병 학 박사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목 차]

I. 당초안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II. 수정안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III. 검토결과 종합 :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I. 당초안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공공정책과 충청남도내에서 발생하는 공적가치의 갈등을 합리적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갈등조정”이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가능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공공갈등진단”이란 예산·비예산 사업등에 대하여 갈등수준과 발생가능성을 종합적 분석하여 목록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내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정시책 갈등 : 도 주요정책으로 도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 대립사항
2. 정부정책 갈등 :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3. 민민갈등 :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적가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간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도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의 지정 및 임무) ①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부서와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는 지역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속직원 교육 및 홍보, 공공갈등진단결과 관리·분석,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회의 개최 및 진행, 부서별 갈등관리 보고·평가 등 갈등관리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실무부서는 공공갈등진단 실시, 갈등기술서 작성, 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행,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갈등관리 진행상황 분기별 총괄부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기타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된 시점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④ 실무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충청남도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손해사정인, 환경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
 - 2. 시민단체 대표
 - 3. 언론인
 -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의원
 -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며, 운영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5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활동기간
3. 당사자의 범위
4. 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결과문 작성
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19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실무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2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도 갈등관리 대상에 대하여 별지3 서식에 따라 분기별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 점검하며,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매년 11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카드 및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갈등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전문가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참여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분석
4.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5.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수정안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당초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공공정책과 충청남도내에서 발생하는 공적가치의 갈등을 합리적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공공정책과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공적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능력의 향상과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정비를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갈등조정”이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가능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공공갈등진단”이란 예산·비예산 사업등에 대하여 갈등수준과 발생가능성을 종합적 분석하여 목록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한 공공사업**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합리적,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여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거나 갈등의 발생시 그 초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갈등조정”이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가능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중립적, 독립적인 제3자의**

전문가 조력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6. “공공갈등진단”이란 예산·비예산 사업 등에 대하여 갈등수준과 발생가능성 등을 체계적 진단 및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목록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안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내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정시책 갈등 : 도 주요정책으로 도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 대립사항
 2. 정부정책 갈등 :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3. 민민갈등 :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적가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간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내 갈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정시책 갈등 : 도 주요정책 추진으로 인한 도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 가치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2. 정부정책 갈등 : 중앙행정기관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된 가치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3. **주민간 공공갈등** :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적가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간 발생하는 **가치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 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경계를 넘거나 충청남도과 인접한 타시·도와 관련된 공공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인접한 타시·도와 협조·협력 및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당초안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도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안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도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도 **합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당초안

-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수정안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도지사는** 갈등의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당초안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안

제7조(부서의 지정 및 임무) ①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부서와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는 지역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속직원 교육 및 홍보, 공공갈등진단결과 관리분석,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구성·회의 개최 및 진행, 부서별 갈등관리 보고·평가 등 갈등관리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실무부서는 공공갈등진단 실시, 갈등기술서 작성, 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행,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갈등관리 진행상황 분기별 총괄부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정안

제7조(부서의 지정 및 임무) ①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부서와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는 지역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속직원 교육**훈련** 및 홍보, 공공갈등진단결과 관리·분석,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회의 개최·진행, **실무부서별** 갈등관리 보고·평가 및 갈등관리실태 **자료요구 및 종합적 업무협조·지원체계 구축 등 총괄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부서는 **갈등관리 예방·해결의 주체로서** 공공갈등진단 실시, 갈등기술서 작성, 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행,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관리 진행상황 분기별 총괄부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당초안

제8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기타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한 시점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 ④ 실무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수정안

- 제8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기타 공공갈등의 동향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한 시점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0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당초안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당초안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
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안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7. 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주민간의 중요한 갈등관리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및 협약체결 등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초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손해사정인, 환경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수정안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상회하도록 해야**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 법조인, 손해사정인, 환경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당초안

-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정안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당초안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초안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안

-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수정안

-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해야 한다.**

당초안

-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며, 운영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5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활동기간
3. 당사자의 범위
4. 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결과문 작성
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수정안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며, 운영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5에 따라 작성한다.

1. 협의회의 목적
2. 활동기간
3. 당사자의 범위
4.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회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전망**
8. 협의결과문 작성
9.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당초안

- 제2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 제2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안

- 제2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실무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수정안

- 제2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배부,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실무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당초안

- 제22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도 갈등관리 대상에 대하여 별지3 서식에 따라 분기별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 점검하며,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매년 11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카드 및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갈등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정안

- 제22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도 갈등관리 대상에 대하여 별지3 서식에 따라 분기별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 점검하며, 각 부서의 갈등관리 **운영실태·추진실적** 등을 매년 11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카드 및 갈등관리 실태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갈등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당초안

- 제23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전문가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참여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분석
 4.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5.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수정안

- 제23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 및**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전문가포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도,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 진단·평가**
 3.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참여
 4.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5.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7.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8.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9.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10.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당초안

제24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제24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체계적인** 갈등관리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초안

제25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 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안

제25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 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초안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Ⅲ. 검토결과 종합 :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공공정책과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공적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능력의 향상과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정비를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한 공공사업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합리적,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여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거나 갈등의 발생시 그 초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갈등조정”이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가능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중립적, 독립적인 제3자의 전문가 조력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6. “공공갈등진단”이란 예산·비예산 사업 등에 대하여 갈등수준과 발생가능성 등을 체계적 진단 및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목록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내 갈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정시책 갈등** : 도 주요정책 추진으로 인한 도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 간 가치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2. **정부정책 갈등** : 중앙행정기관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된 가치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3. **주민간 공공갈등** :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적가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간 발생하는 가치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 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경계를 넘거나 충청남도과 인접한 타시·도와 관련된 공공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인접한 타시·도와 협조·협력 및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도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도지사는 갈등의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의 지정 및 임무) ①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부서와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는 지역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속직원 교육훈련 및 홍보, 공공갈등진단결과 관리·분석,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회의 개최·진행, 실무부서별 갈등관리 보고·평가 및 갈등관리실태 자료요구 및 종합적 업무협조·지원체계 구축 등 총괄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부서는 갈등관리 예방·해결의 주체로서 공공갈등진단 실시, 갈등기술서 작성, 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행,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관리 진행상황 분기별 총괄부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기타 공공갈등의 동향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된 시점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0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충청남도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7. 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주민간의 중요한 갈등관리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및 협약체결 등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상회하도록 해야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 법조인, 손해사정인, 환경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해야 한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며, 운영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5에 따라 작성한다.

1. 협의회의 목적
2. 활동기간

3. 당사자의 범위
4.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회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전망
8. 협의결과문 작성
9.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19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배부,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실무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2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도 갈등관리 대상에 대하여 별지3 서식에 따라 분기별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 점검하며, 각 부서의 갈등관리 운영실태·추진실적 등을 매년 11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카드 및 갈등관리 실태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갈등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 및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전문가포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도,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 진단·평가
3.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참여
4.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5.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7.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8.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9.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10.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체계적인 갈등관리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 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